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의정부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관 정희원  
전화 031-820-4460

**보도자료**  
2020. 6. 1.(월)

**제 목** **대검의 디엔에이 감정을 통해 중대 성범죄 혐의 입증하여 직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의정부지방검찰청 여성·강력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송지용)는 대검찰청 디엔에이·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유력한 물증을 확보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특수준강간)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혐의 부인하던 피의자 3명을 모두 직구속 기소

**1 사건 개요**

- 피고인 : A(20세, 무직), B(23세, 회사원), C(20세, 무직)
- 공소사실 요지
  - A는 2019. 1. 5.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(여, 18세)를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후, B, C에게 “엄청 취해서 해도 모르니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.”라고 말하여 B, C로 하여금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여 [준강간, 성폭법위반(특수준강간)교사]
  - B, C는 같은 날 A로부터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여인숙에 잠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여인숙을 찾아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여 [성폭법위반(특수준강간)]

## ② 수사 경과

- 2019. 5. 의정부경찰서, 이 사건 송치
- 2019. 6. ~ 2020. 5. 의정부지검, 대검 디엔에이·화학분석과에 피해자의 팬티에 대한 유전자 재감정 의뢰, 감정 결과 다른 공범 C의 유전자도 검출됨(A를 B, C의 교사범으로 추가 인지)
  - ※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A의 유전자만 검출
- 2020. 5. 8. B, C 각 직구속 / 2020. 5. 15. B, C 각 기소
- 2020. 5. 20. A 직구속 / 2020. 5. 27. 기소

## ③ 수사 의의

- 이 사건은 A가 1차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, B, C가 A의 교사에 따라 2차로 피해자를 특수준강간한 것임
  - 그러나 B, C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였음
- 우리청은 증거관계상 B, C 또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어 B, C의 유전자 또한 피해자의 팬티에 묻어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검 디엔에이·화학분석과에 피해자의 팬티에 대한 유전자 재감정을 의뢰
- 대검은 정액흔 등 40여개의 얼룩 전부를 대상으로 면밀히 감정을 실시한 결과 C의 유전자를 발견
  - ※ 대검은 유전자를 검출할 시료를 최소 단위로 쪼개 유전자 재감정을 실시하였고,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량이 묻어있어 다른 사람의 유전자에 가려져 있던 C의 유전자를 발견하였음
- 위와 같은 방법의 과학수사를 통하여 유력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B, C를 우선 직구속 기소하였고, B, C는 위 증거가 제시되자 ‘사실은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, A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맞다.’는 취지로 자백함에 따라 A 또한 직구속 기소하였음 ☐